

부산지방법변호사회소식

BUSAN BAR ASSOCIATION

- 인물포커스 「이성문 변호사 인터뷰」
- 부산·효고 양 변호사회 간 인적/지적 교류회
-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

2023

8

Vol.164





<표지사진>
해변의 치유

모질게 피부였던 2023년의 장맛비!
그로 인한 아픔을 위로하듯 바닷물은 더 큰 아름다움으로 다가온다.
8월의 휴가는 이 멋진 물속에서 치유를 완성한다.

사진작가: 김경호 변호사

Contents

2023 August Vol.164

인물포커스	04	이성문 변호사 인터뷰	
회원 참여활동	08	부산·효고 양 변호사회 간 인적/지적 교류회	김남희 변호사
회원기고	11	(판결소개)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	최달웅 변호사
	21	(칼럼) 음주운전 차량몰수	이일권 변호사
	24	(여행기) 너랑 나랑 나트랑	황민호 변호사
최신판례	27	편집위원회	
법률신간소개	29	편집위원회	
동호회 소개	30	여행·문화·사진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알림마당	33	회무일지/회의일지	
	34	회의소식	
	35	회원동정	
	38	경조사 현황 2023년 7월	
	38	무료법률상담 현황 2023년 7월	
	38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후원금 현황 2023년 7월	
소식마당	39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안내	40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결과 안내(2023.7.4.)	
	43	소식지 원고모집 및 도서관 이용 안내	
편집후기	44	최원진 위원	

인물 포커스



이성문 변호사

주요 이력

- 서울대 경제학부
- 사법연수원 35기
- 제8대 연제구청장
- 법률사무소 해오 대표변호사
- 더불어민주당 연제구 지역위원장

interview



Q 먼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변호사님의 약력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사법연수원 35기입니다. 아직 별로 안했다 생각했는데 벌써 변호사 시작한 지 18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군 제대 후 사법시험 공부를 해서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 3년간은 서울에서 근무하다 결혼과 함께 고향 부산으로 와서 법무법인 국제, 율하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해오에서 다른 변호사님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법조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A 이게, 말하면 좀 웃기고 별 것 없는데, 어릴 때 친구들 사이에 뭔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얘기를 듣고 나름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요(잘못하면 오지랖부리는 사람으로 될 수도 있겠네요). 또...JFK라는 영화에 나오는 변호사, 검사의 역할이 멋있게 보였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강우석이라는 검사가 멋있어서 나도 검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단순반복적인 일보다 세상에 다양한 일을 접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법조인의 길을 선택한 것 같기도 합니다(미리 생각해 온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세월을 지내 보니 그렇구나 하고 정리한 내용일 수도 있겠네요)

Q 변호사님께서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정치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A 사실 법조인을 내 인생으로 정한 것과 같은 정도로 정치활동을 하게 된 계기 또한 매우 우연적이고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고난의 길을 걸어오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거창한 동기 부여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기를 생각해 보자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법을 다루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회 문제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임에서 친구들과 사회 지인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게 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정치를 한 번 해 보라는 반농담 식의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재_김민준 편집위원

그러던 중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김해영 의원(부산변호사회 소속이죠. 현재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이 천거해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김해영 의원에게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연제구청장으로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신 내용과 주요 성과가 무엇이며, 아쉬운 점은 어떤 것이 있으셨는지요?

☎ 구청장으로 당선되기까지는 지역 정치계에서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구청장 잘못 뽐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비록 작년 선거에서는 선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구청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나쁜 평을 듣지는 않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제구는 부산시청 및 관공서의 이전을 계기로 1995년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만들어진 행정구역이어서 연제구 지역 자체의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제구하면 이거다 하고 딱 떠올릴 만한 무엇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구되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은 물론 앞으로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은 계속 고민이 되는 사안일 겁니다.

그래도 연제구는 지리상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부산의 도시 구조상 교통이 잘 되어 있어 시민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제일 우선 들었고 이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공감대로 형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연제구가 도시 중심이지만, 연제구를 하나의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도시 녹화 사업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창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중에는 바로 느끼지 못했던 것이 저도 우리 지역을 거닐다 보면 어느새, 아 어느새 도시가 점점 초록색을 갖추어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연산교차로 인근 상권을 ‘오방맛길’이라고 하여 과거 지저분하고 무분별한 분위기의 상가 거리를 잘 다듬어 유흥의 이미지를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상권활성화를 도모했다는 점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는 시청 옆 소소길 조성도 그렇고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 및 상권 활성화에도 이어져 소상공인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연제구에서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했다는 점은 기억에 남습니다. 도서관의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개관할 만화도서관 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건축하고 기존의 시설을 주민들이 좀 더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애쓴 점도 기억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구정 운영에 있어 구태를 없애고 업무와 성과에 집중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도 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쉬움이야 당연히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래도 주민들의 선택은 당연히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연제구에 부족한 아쉬움은 문화시설의 부재인데, 이에 대해 진행되던 중 현 구청장님도 여기에는 뜻을 같이 해서 좋습니다. 제대로 된 문화시설이 만들어질길 기대해 봅니다.

Q

변호사님께서는 구청장을 역임후 현재 변호사로서 삶을 살아가시고 계신데 구청장을 역임하기 전과 후의 변호사 활동에 변화는 있으신지요?

☎ 저의 본 기초는 당연히 변호사입니다. 4년간 손놓았다가 다시 일을 하려면 법 기본서



Q

변호사로서 정치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후배 변호사들이 정치에 뜻을 두고 있다면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우선 변호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 등의 자격에도 변호사가 빠지지 않죠. 그렇다 보니 변호사가 정치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매우 좋은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회의원 개개인의 직역을 보면 법조인 출신이 꽤 많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도 법조인이군요). 그래서 정치에 뜻이 있다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그 뜻을 펼치기에 매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변호사는 대립, 충돌하는 양자의 한 쪽을 변호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함에 있어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 즉 이심전심의 지혜가 전략상 필요하기도 하고 종국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변호사로서의 업무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정치의 역할과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업으로서의 변호사의 활동을 통하여 정치 영역에서 하여야 할 것을 미리 훈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 변호사로서의 경험이 정치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이라는 테두리와 한계에 얽매일 수 있다는 단점이 정치 활동을 하는 법조인에 대한 인식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경험을 하고 세상의 다종다양한 사람과 의견, 환경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저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인 다짐이기도 합니다).

Q

부산지방법변호사회에 바라시는 점은 있으신지요?

☎ 제가 딱히 말씀드릴 것이 없을 만큼 다들 부산 변호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모습에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가 변호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나 사람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처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신뢰도는 결국 우리 회 소속인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 제고로 변호사 업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Q

향후 변호사님의 계획이나 포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재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위원장으로 정치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에 봉사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다소 상투적인 포부겠지만 제일 적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효고 양 변호사회 간 인적/지적 교류회

- 로톡 VS 벤고시닷컴 등 비교분석 토론회 -



김남희 변호사



김해공항에 도착한 효고현변호사회 집행부와 회원들

2023. 7. 21. 이른 아침, 김해공항에 효고현변호사회 방문단이 도착하였다. 오랜 친구(親友)의 방문을 반기듯, 전날만 해도 폭우가 쏟아지던 날씨가 화창하기 그지없었다.

부산지방법변호사회(회장 염정욱)와 효고현변호사회(회장 시바타 마리) 양회(兩會) 변호사 간 반가움을 나누는 시간도 잠시, 양회는 정해진 부산지방법원(형사법정 방청 및 이준범 부장판사와의 질의응답), 부산지방법검찰청(디지털 수사실, 심리생리분석실 등 방문) 일정에 따라 오전과 오후를 모두 소화하고, 4시가 되어서는 부산지방법변호사회 대회의실에 마련된 토론회장으로 발길을 옮겼다.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효고현변호사회의 많은 연사들이 입을 모아 법원과 검찰청에서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주어 놀랐으며, 부산지방법변호사회 등 부산지역 법조에 대한 감사 인사로 포문을 열었다.

빠르게 성장하는 리걸테크 시장에 대한 한일 양국 간 현황·대응 차이에 큰 관심을 보인 열띤 토론회

부산지방법변호사회(국제위원 서현선 변호사)가 먼저 한국의 현존하는 법률 중개 플랫폼의 현황과 대응을 소개, 그중 헌법소원 실례(로톡 등)까지 발표했고, 이어 효고현변호사회(부회장 나쿠라 히로타 변호사)는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변호사 중개사이트, 벤고시닷컴(www.bengo4.com)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과 운영 실태를 전달했다.

효고현변호사회단은 특히 헌법소원 내용과 과정, 결과 등에 큰 관심을 보였고, 부산지방법변호사회에서는 큰 분쟁 없이 운영되고 있는 벤고시닷컴의 정착 과정 등에 많은 질의가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어에 능통한 통역사의 매우 유창한 동시통역이 있었음에도 양회의 향학열이 너무 뜨거워 변호사들이 직접 한국어, 일본어, 영어 등 3개 국어를 고루 써가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고, 덕분에 2시간의 토론회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변호사 애원은 변호사가 알아주는 시간, 소규모 레이블 간 간담회

뜨거웠던 토론회 이후, 부산 시티호텔에서 열린 저녁 간담회가 충분히 양회 변호사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자리가 되었다.



테이블별로 지정석에 앉아 서로 간 공사 다방면으로 궁금했던 이야기, 양 지역의 자랑거리 소개, 변호사들의 애환과 극복법 공유 등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그뿐만 아니라 양회는 서로에 대한 예우로 각국의 상징적 기념품 교환식을 가짐으로써 양회의 신임 회장, 집행부의 소개도 매끄럽게 이어졌다.



2024년에는 호고에서 만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인적·지적 교류를 나누던 양회 변호사들은, 내년에는 부산지방법변호사회가 효고현을 방문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지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부산지방법변호사회는 향후 효고현변호사회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의 변호사회와 교류를 가질 예정이다.



트랜스젠더의 처우에 대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



최달웅 변호사

우리 대법원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예규를 보면, 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의 심리를 위해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 등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수술로 생식능력이 완전히 상실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6년 6월 성전환수술을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성별정정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처음으로 허가한 이후, 각급 법원이 성별정정사건을 심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법원 예규가 참고사항임에도 일부 재판부는 ‘허가’ 여부의 판단 기준으로 사용해 당사자가 원치 않은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 제거 수술 등을 받아야 한다며 2021년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3. 5. 25. 성전환수술 여부로 성별정정 허가를 내주는 법원의 판단은 “심각한 인격권 침해”라고 밝히면서, 대법원장에게 해당 내용이 담긴 대법원 지침을 전반적으로 바꿀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성별정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성별정정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할 수 없다”고 서면 답변했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 법원에서도 2021년 10월 생식능력 제거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처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한 뒤, 일부 법원이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지만, 2023. 7. 11. 최고재판소(제3소법정)에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사용 등 처우에 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2심이 결론을 달리하였는데, 상고심은 5인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소법정 판결이라도 반대의견 등이 제시됩니다. 해당 사건에서 구속력 있는 법정의견 이외에, 같은 소법정의 5인 재판관 모두가 법정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보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사안이 어떠한지 등과 같이 궁금하신 점들은 아래와 같이 줄렬

하나마 번역한 판결서를 한 번 읽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분은 트랜스젠더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인 여성으로서 근무해 왔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마사키 유키히코 재판관은 1957년생으로 판사 출신, 우가 카츠야 재판관은 1955년생으로 도쿄대학교 교수 출신, 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은 1957년생으로 판사 출신,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관은 1958년생의 여성으로 변호사 및 교수를 거쳤고, 나가미네 야스마사 재판관은 1954년생으로 직업외교관 출신입니다. 재판관들의 개성이나 관심사, 관점 등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덧붙이지만 저는 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이 그대로 동조한다고 밝힌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읽으면 서,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주문

- ① 원심 판결의 인사업원이 내린 판단 중 화장실 사용에 대한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피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②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③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의 1로 하고, 그 1을 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대리인 야마시타 토시아사(山下敏雅) 등의 상고이유(단, 배제된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1. 이 사건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성정체성 장애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원에 직장 내 화장실 사용 등에 관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기 때문에 피상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판정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된 사실관계 등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86조는 공무원은 봉급, 급여 기타 모든 근무조건에 관하여 인사원에 대하여 인사원 또는 국무총리 또는 그 직원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행정상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7조는 위 요구가 있는 경우, 인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구술심리 기타 사실심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및 관계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직원의 능률의 발휘 및 증진의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가) 상고인(몇 년생)은 몇 년도 4월 무엇으로 채용되어, 2004. 5.부터 경제산업성의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위 부서의 집무실이 있는 청사(이하 '이 사건 청사'라고 한다.)에는 남녀별 화장실이 각 층에 세 개씩 설치되어 있다. 남녀 공용 다목적 화장실은 위 집무실이 있는 층(이하 '이 사건

집무층'이라 한다)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다른 곳의 여러 층에 설치되어 있다.

(나) 상고인은 생물학적 성별은 남성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강한 위화감을 가지고 있었다. 상고인은 1998년경부터 여성 호르몬을 투여받게 되었고, 1999년경에는 성정체성 장애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상고인은 2006년경까지 무엇을 받았고,¹⁾ 2008년경부터 여성으로서 사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상고인은 2010년 3월경에는 혈중 남성호르몬의 양이 동년배 남성의 기준치 하한을 크게 밑돌고 있어, 성충동에 의한 성폭력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상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

(3) (가) 상고인은 2009년 7월 상사에게 자신의 성정체성 장애를 알리고, 같은 해 10월 경제산업성 담당 직원에게 여성 복장으로 근무하고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10. 7. 14. 경제산업성에서 상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고인이 근무하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상고인의 성정체성 장애에 대해 설명하는 모임(이하 '이 사건 설명회'라 한다.)이 열렸다. 담당 직원은 이 사건 설명회에서 상고인이 퇴장한 후 상고인이 이 사건 청사 여성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사건 집무실의 여성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몇몇 여성 직원들은 그 태도로 보아 위화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담당 직원은 상고인이 이 사건 집무실의 한층 위층에 있는 여성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여성 직원 1명이 일상적으로 해당 여성화장실도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설명회에서의 교류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에서 상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청사 중 이 사건 집무실과 그 위 아래 층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인정하지 않고, 그 외 층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인정하는 처우(이하 '이 사건 처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상고인은 이 사건 설명회 다음 주부터 여성 복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이 사건 집무실에서 2층 떨어진 층의 여성화장실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적은 없다.

상고인은 2011년 ▲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름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6월부터 직장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4) 상고인은 2013. 12. 27.자로 국가공무원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직장 내 여성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여성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인사원은 2015. 5. 29.로 그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 이하 이 사건 판정 중 위 화장실 사용에 관한 요구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판정 부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심은 위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이 사건 판정 부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경제산업성에서 이 사건 처우를 실시하고 이를 유지한 것은 상고인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적절한 근무환경을 구축할 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판정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외부로 공개된 판결에서는, 상고인의 나이, 채용 당시의 직위 및 상고인이 받은 진단 등 내용 등을 익명처리([약술]로 표시됨)하였다.

(1) 국가공무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조치 요구에 대한 인사원의 판단은, 광범위한 직원의 근무조건에 대하여 일반 국민과 관계자의 형평성, 직원의 능률 발휘 및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인사행정이나 직원의 근무 등 실정에 맞는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동법 제71조, 제87조), 그 판단은 인사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위 판정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사건 처우는 경제산업성에서 이 사건 청사 내 화장실 사용에 관하여 상고인을 포함한 직원의 복무환경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조정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고인은 성정체성 장애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우에 따라 자기의 성별과 다른 남성용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이 사건 집무실에서 떨어진 층의 여성용 화장실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 일상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상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성호르몬의 투여 등을 받는 등으로, 성충동에 의한 성폭력 가능성은 낮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상고인이 이 사건 설명회 이후 여성복장 등으로 근무하고, 이 사건 집무실에서 2층 이상 떨어진 층의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또한 이 사건 설명회에서는 상고인이 이 사건 집무실 층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담당 직원 중 몇 명의 여직원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을 뿐, 명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직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설명회부터 이 사건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약 4년 10개월 동안 상고인이 이 사건 청사 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야 할 다른 직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실시되어 이 사건 처우에 대한 재검토가 검토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에 의하면, 늦어도 이 사건 판정 당시에는 상고인이 이 사건 청사 내 여성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특별히 배려해야 할 다른 직원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상고인에게 이 사건 처우로 인해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상고인에게 본건 처분에 의한 위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정 부분에 관한 인사원의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 대한 배려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상고인의 불이익을 부당하게 경시한 것으로서, 관계자의 공평 및 상고인을 포함한 직원의 능률 발휘와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서,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판정 부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5. 이상과 다른 원심의 판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다.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판정 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청구는 이유가 있고, 이를 인정하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위 부분에 대한 피상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한편 상고인의 나머지 상고에 대해서는 상고수리신청사유가 상고수리결정에서 배제되었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재판관 우가 카츠야, 재판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재판관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관 하야시 미치하루, 재판관 이마사키 유키히코의 각 보충의견이 있다.



우가 카츠야 판사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에서 1심과 원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것은, ① 상고인이 여성호르몬 투여 등으로 여성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이름도 여성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변경된 MtF (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이기는 하지만,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중요한 법적 이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 ② 상고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알게 된 동료 여성 직원이 상고인과 같은 여성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화감·수치심 등을 어느 정도 중시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건을 검토함에 있어서 상고인이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사건에서 경제산업성은 상고인이 호적상으로도 여성이 되면 화장실 사용에 대해서도 다른 여성 직원과 동일하게 취급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행 ‘성정체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고인이 호적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성별정정 수술을 해야 한다. 이에 관한 규정의 합헌성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지만, 그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성전환 수술은 신체에 대한 침습이 불가피하고 생명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며, 경제적 부담도 크고, 체질 등으로 인해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받지 않은 이 사건에서도 상고인은 당분간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었고,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지만, 경제산업성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존중하는 대응을 할 것을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경제산업성은 직원의 능률이 충분히 발휘되고 그 증진이 도모될 수 있도록 복무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는바(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청사 내 화장실에 대하여, 상고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이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동료 직원의 심정 또한 배려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경제산업성이, 여성 직원이 상고인과 같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화감, 수치심 등을 중시하여 취한 대응이 상고인의 이익에 대한 제약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법정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상고인이 여자 화장실을 사용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는 없었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본건 판정이 이루어진 2015. 5. 29. 당시에는 상고인이 여성 복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4년 10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상고인이 이름을 변경하여 직장에서 그 이름을 사용하게 된 2011. 6.으로 부터는 약 4년이 경과한 상태였다. 따라서 본건 판정 시에는, 여성 직원이 상고인을 MtF(Male to Female)의 트랜스젠더로서,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남성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가 이 사건 집무실과 그 위아래 층의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이로 인한 지장을 중시할 것이 아니므로, 상고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다른 여성 직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약하는 것이 정당화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상고인이 호적상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동료 여성 직원이 상고인과 같은 여성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위화감·수치심 등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교육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고인으로부터 커밍아웃이 있었고, 2009.

10.에 여성화장실 사용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설명회 이후의 즉각적 조치로써 상고인의 여성화장실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산업성은 조기에 교육을 실시하여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면서 그러한 제한을 재검토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상고인에게 성전환 수술을 받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약 5년이 경과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생사회 실현을 향하여, 직장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판정 부분은 이 사건 사실관계 하에서 인사청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상고인이 MtF의 트랜스젠더이면서 호적상으로는 여전히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여성 직원이 느낄 수 있는 위화감·수치심 등을 과대평가하고, 상고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다른 여성 직원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익을 과소평가하였으므로,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재판관 나카미네 야스마사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나, 다음과 같은 점을 더 부연하고자 한다.

이 사건 설명회에서 담당 직원이 몇몇 여성 직원의 태도에 위화감을 느낀 것으로 보아, 경제산업성 입장에서는 직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이 사건 처우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화장실 사용에 대한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불이익을 입은 것은 상고인뿐이었기 때문에, 그 조정방안으로서의 이 사건 처우가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고인은 이 사건 설명회 다음 주부터 여성의 복장 등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니, 이 사건 처우는 급격한 상황변화에 따른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고, 상고인이 이익을 제기하지 않은 점까지도 함께 고려하면, 2010. 7월 시점에서, 일정한 합리성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판정시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고인은 직장에서도 일관되게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산업성에서는 이 사건 설명회에서 여성직원이 느끼는 위화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소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상고인에게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던 이 사건 처우를 유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재검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상고인의 화장실 사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더하여, 자신이 인정하는 성별에 따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이익이며, 특히 트랜스젠더인 사람에게는 더욱 절실한 이익인 점, 그리고 이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으로 봐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정의견과 같이, 인사원이 상고인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요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판단 부분은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재판관 와타나베 에리코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 취지 및 이유 모두 법정의견에 찬동하지만, 트랜스젠더(MtF)인 상고인의 이 사건 청사 내 화장실 이용에 대한 검토에 대해 보충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시설관리권 등에 근거하여 경제산업성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성별은 개인의 속성으로서,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있어 개인의 인격적 생존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개인이 진정으로 자각하는 성별에 맞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법익으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법익이라 하더라도 다른 이익과 충돌할 때는 합리적인 제약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구분을 전제로 남녀별 화장실을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트랜스젠더인 상고인과 이 사건 청사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 직원들(시스젠더)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 양자의 이익형량 및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 직원들의 이익을 경시할 수는 없지만, 상고인에게서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익이며, 더욱이,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측 간의 이익형량·이해조정은 감각적·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상고인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설명회 다음 주부터 여성의 복장 등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행동양식이나 거동, 외모를 포함하여 여성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상고인의 여성화장실 이용에 있어서는 법정의견이나 1심 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여성직원들의 보호받아야 할 이익(상고인의 화장실 이용으로 인해 상실되는 여성 직원들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여성직원들의 이익이 실제로 침해되는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경제산업성은 이 사건 설명회에서 여성 직원이 위화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로, 상고인에 대해 상고인이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 층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 층, 총 3개 층의 여성 화장실의

이용도 금지하는 이 사건 처우를 결정하고, 그 후에도 상고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고 호적상 기재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를 재검토하지 않고 약 4년 10개월에 걸쳐 이 사건 처우를 유지해 온 것이다. 이러한 경제산업성의 대응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상고인에게만 일방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서 공평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트랜스젠더가 자각하는 성별의 화장실 이용에 위화감을 느꼈더라도, 그의 사정을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함께 위화감이 완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단적인 예로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한 여성 직원 등이 존재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오해에 근거한 불안감 등의 해소를 위해 트랜스젠더의 법익 존중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 또한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약 경제산업성이 당초 여성 직원들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격변 완화 조치로서, 잠정적으로 근무하는 부서가 있는 층만 이용을 금지한다(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지만, 상하 2개 층의 여성 화장실 이용까지 금지한다)고 해도, 성전환 수술 실시 여부에 굳이 집착하지 않고, 시설 관리자 등으로서 여성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점진적으로 그 금지를 완화·해제하는 등의 방법도 충분히 가능했고, 또 그렇게 했어야 했다.

또한 원심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설명회에서 여성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상고인이 남성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고인이 여성화장실 이용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여성 직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설명회에서 여성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일의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상고인에게 자신이 인정하는 성별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여성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직원의 존재도 엿볼 수 있다). 또한 여성직원들이 다수 앞에서 이의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는 것을 꺼려했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황하면서도, 상고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나 반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생각한 여성직원들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원심이 이와 같이 여성직원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 성적 불안 등 성적 이익'이라는 감각적이고 추상적인 우려를 근거로 이 사건 처우 및 이 사건 판정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화장실 이용에 관한 이익형량 및 이해관계 조정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남녀를 구분해 온 점과 그러한 구분을 전제로 화장실을 이용해 온 직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성적 소수자인 직원에 대한 개별적인 사정이나, 예를 들어 직장 내 화장실이라도 외부인의 이용도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상한 사람의 배제 등 화장실의 안전한 이용과 같은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 취급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개별 사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어쨌든 시설관리자 등이 여성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성적 불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트랜스젠더(MtF)의 여성 화장실 이용에 반대한다는 전제에 서지 않고, 가능한 한 양자의 공생을 목표로, 직원들에게도 성소수자의 법익 존중을 이해시키는 방향을 교육함으로써 그 과정을 실천해 나가기를 강하게 기대한다.

재판관 하야시 미치하루는, 재판관 와타나베 에리코의 보충의견에 동조한다.



재판관 이마사키 유키히코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다.

트랜스젠더가 사회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성에 걸맞은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절실한 욕구이다. 이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는 이제 사회 전체가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화장실 사용은 그 한 예에 불과하지만, 예를 들어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남성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의 정신적 고통을 상상해 보면, 그 필요성은 분명하다.

이 사건 설명회에서 상고인은 여성 직원들 앞에서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혔지만, 이후 진행된 의견청취 절차에서 여성 직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 후 상고인은 이 사건 처우에 따라 사용이 허용된 층의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이 사건 판정 당시 약 4년 10개월(휴직기간을 제외하면 약 3년 8개월)에 달하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설명회에 앞서 상고인은 199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여성호르몬을 투여받았고, 2008년경부터는 사적인 시간을 모두 여성으로 보내게 되었으며,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법정의견은 이 사안에서 직접적으로는 상고인의 행정조치 요구에 대한 인사원의 이 사건 판정 부분의 당부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고인에 대한 경제산업성 당국의 대응 일련에 대한 평가가 핵심이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꼽자면,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직장 내 시설의 관리자, 인사담당자 등이 취해야 할 자세로서, 트랜스젠더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진지하게 조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과제는 그 너머에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같은 화장실을 사용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설명(정보 제공)이나 이해(납득) 없이 자유롭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해와 납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과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지만, 그 결과 소극적인 의견이나 저항감, 불안감 등이 제기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한 가운데 진지한 자세로 조정해 힘써도 여전히 관계자의 이해를 얻지 못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것이다(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 어떤 범위의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특히 본인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전달할 것인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과의 신중한 균형이 요구되며, 사안에 따라 그 판단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등이 요구되지만, 조직, 규모, 시설의 구조 등 직장을 둘러싼 환경, 직종, 관련 직원의 인원수나 인간관계, 해당 트랜스젠더의 직장 내 근무 상황 등 현상은 다양하므로, 일률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트랜스젠더 본인의 요구와 다른 직원들의 반응 의견을 잘 듣고, 직장 내 환경 유지, 안전 관리의 관점 등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사례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고민하는 직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인사담당자, 경영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민간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례들이 더 많이 쌓이면서 표준적인 처우와 지침, 기준이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 없이는 안정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사회 전반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한편 이 사건 판결은 화장실을 포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사용이 예상되는 공공시설의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추후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몰수



이일권 변호사

자동차는 현대 문명의 이기중 하나이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자동차는 거대한 흉기로 변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것이고, 살인행위에 준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202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 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재범률도 42.24%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심야뿐만 아니라 출근시간대와 대낮에도 발생한다. 2023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01 > 음주운전 차량몰수

‘중대한 음주운전 범죄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압수하겠다.’
검경은 2023년 7월 1일부터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범죄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다. 둘째,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이다. 셋째,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이다. 넷째,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차량 압수·몰수 대책이 시행된 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가 부산에서 나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3년 7월 9일 음주운전자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고 허리 골절 등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히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했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3번째다. 검찰은 A씨에 대하여 재범 우려가 높고 3차레 모두 본인의 벤츠 차량을 이용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한 것은 대책 시행 이후 첫 사례이다.

이에 앞서 오산시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되었지만 이는 임의제출 방식이었다. 사건을 살펴보자. 운전자 B씨는 2023년 6월 27일 대낮에 경기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0.2%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어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오산경찰서는 2023년 7월 4일 도

주지사 등 혐의로 구속된 B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B씨는 초범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이 압수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02 > 차량몰수 법률관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가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는 몰수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필요적으로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고, 만약 몰수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범인 즉 운전자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만약 운전자의 배우자 소유 차량이라면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배우자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후 사실상 자신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자동차가 법인 차량 또는 렌터카나 리스차량과 같이 운전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만일 운전자가 압수를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매각 또는 증여하여 그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타인이 몰수 대상의 차량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이

를 몰수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차량을 몰수할 수 없다. 운전자는 차량 몰수를 면했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차량의 가액만큼 추징이 가능하다. 추징 가액은 자동차 자차보험 차량가액 또는 중고차 시세로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몰수 대상 차량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되거나 운전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경우, 경찰은 견인차를 이용하여 차량을 경찰서 주차장 등으로 끌고와서 이를 집행해야 한다. 압수한

차량은 압수물에 해당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이를 함께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물인 차량을 보관해야 한다. 검찰청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여유 공간이 없다. 이처럼 현실적인 이유로 지금까지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임차한 공터나 견인차량 보관소 등에 압수한 차량을 보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선고하면 운전자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잃게 되고, 차량은 국고로 귀속된다.

03 >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운전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 주목할 부분이 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자기부담금 한도가 대폭 상향된 것이다. 이것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촉발되었다.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연쇄 추

돌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등을 포함해 9명의 피해자에게 8억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7월 28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변경하였다. 중요한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 때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에 대한 사고부담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의무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의무보험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인은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이므로, 운전자는 최대 1억 7천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대인은 사고 건수가 아닌 피해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임의보험 자기부담금의 경우 대인은 사고 1건당 1억원, 대물은 사고 1건당 5천만원이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차량이 파손되어 대인 보험금 3억원과 대물 보험금 1억원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은 대인은 2억 5천만원(의무보험 1억 5천만원 + 임의보험 1억원), 대물은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 임의보험 5천만원)에 이르게 된다.

최근 음주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소위 윤창호법을 시행하면서,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었다. 또한 2022년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자기부담금 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그리고 2023년 7월 1일부터 검경은 음주운전 차량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술 마시고 운전석에 앉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자.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너랑 나랑, 나트랑

“베트남 커피가 먹고 싶어요.”

무심한 아내의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커피는 우리 동네에도 많이 파는데요.”라고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그냥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말에는 ‘커피’보다는 ‘베트남’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을 결혼생활 14년차가 되니 자연스레 깨닫게 되었지요. 그러다 문득 아내에게도 저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코로나로 하늘길이 막혀 너무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보질 못했으니까요. 아울러 저 역시 문득 베트남 커피 맛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전히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행선지는 베트남 남부 휴양도시 ‘나트랑(냐짱)’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지도상으로 보면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마치 영어 알파벳 ‘S’자를 세로로 쭉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할까요. 북쪽으로는 중국, 서쪽으로는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남쪽으로는 메콩강이 흘러나와 태평양으로 빠져나갑니다. 베트남인들은 대부분 북부 아니면 남부 두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데 나트랑은 남부의 아름다운 휴양도시로 ‘동양의 나폴리’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이에 대해 무슨 소리냐며 동양의 나폴리는 다름 아닌 통영이라고 주장하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 통영 출신 변호사님도 이 글을 보실지 모르니 굳이 제 의견은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 두 곳 다 아름다운 곳이죠. 나트랑은 서구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19세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점령하였을 때 프랑스계 정부 요인들의 거주지로 개발된 곳이 나트랑이라고 하네요. 나트랑이라는 이름은 1940년대에 들어 일본군이 주둔하면서부터 불리어진 이름으로 베트남 사람들은 냐짱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황민호 변호사

■ 나트랑의 일출

이번 여행의 테마가 커피였던 만큼 베트남 커피에 대해 사전조사를 많이 하고 떠났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피 원두를 많이 재배하는 국가가 베트남이라는 사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19세기에 프랑스가 자국에 커피를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에 처음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전쟁 이후에는 베트남 정부가 나서서 대량으로 커피 생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연간 180만 톤 이상의 원두를 수확하고 있으며 커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 커피점이 있다고 하네요.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베트남 커피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연유를 넣은 달달한 커피입니다. 높은 기온 탓에 우유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우유를 진공상태에서 농축시켜 만든 것이 연유이지요. 이렇게 달달한 연유를 베트남 말로 ‘쓰어’라고 하고, 얼음까지 넣으면 ‘다’를 붙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커피가 ‘카페 쓰어 다’라고 해서 연유를 넣은 아이스 커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는 ‘카페 덴 농’이라는 블랙커피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아메리카노 같은 건데 ‘카페 덴 농’은 오히려 에스프레소에 가까울 정도로 진한 맛입니다. 연유를 선호하는 건 관광객이나 외국인



■ 베트남 정통커피 카페 덴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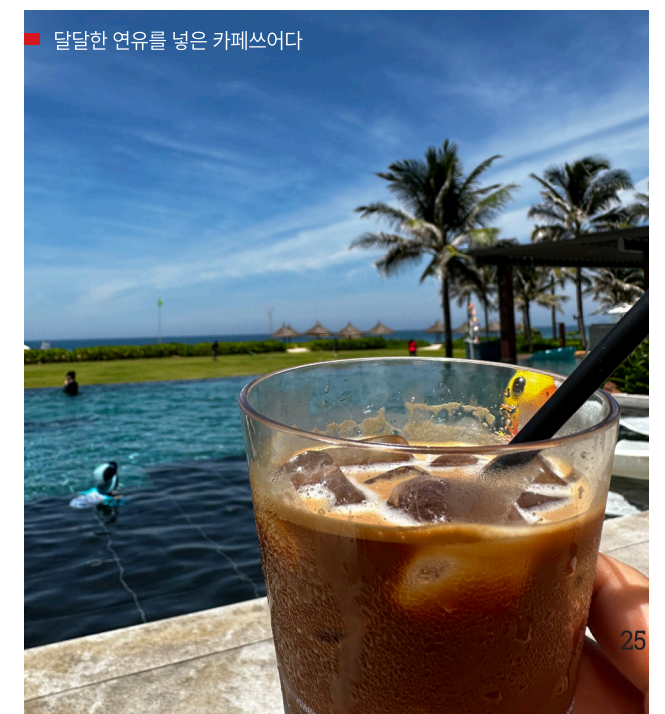
들이죠. 블랙커피가 워낙 진하니까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연유커피를 주문하면 연유가 베이스에 깔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커피와 연유가 아예 따로 나옵니다. 개인의 취향에 맡기는 것이지요.

저는 이번 나트랑 여행을 통해 블랙커피 ‘카페 덴 농’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너무 진하고 강해서 살짝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레 연유를 찾게 되더군요. 그러나 몇 번을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나니 그 특유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고농도 카페인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별다방(Starbucks)에서 샷(Shot) 추가로 마시던 아메리카노는 이에 비하면 연하디연한 보리차와 같았습니다. 나트랑을 떠나기 전 많은 사람들이 유명 카페를 추천해주며 그곳에서 파는 코코넛 커피를 꼭 먹어보라고 했는데 딱히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더위와 갈증을 달래줄 달달한 맛이지는 한데 뭔가 가짜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커피라는 말을 빼고 그냥 코코넛 음료라고 했으면 봐줄만했죠. 혹시 다음에 베트남을 여행하신다면 베트남의 정통커피 ‘카페 덴 농’을 꼭 맛보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 드립니다.

관광보다는 휴식이 목적이었기에 주로 리조트에서 지냈습니다. 10개 가까이 되는 수영장에 워터파크까지 있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더군요. 수영을 하다 풀 바(Pool Bar)에서 시켜먹는 피자는 꿀맛이었습니다. 같이 나온 꿀에 찍어 먹어서 진짜 꿀맛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선 베드(Sun Bed)에 누워 바다를 바라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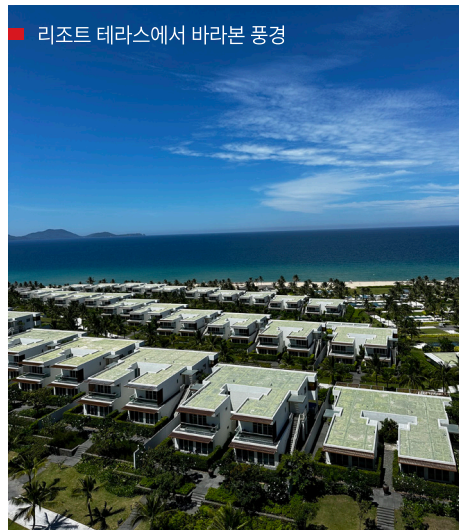
있으니 비로소 일에서 단절된 참된 휴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쓰고 싶지만 간간이 울리는 업무 관련 카톡에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밍을 해간 제 탓이지 어찌겠어요. 수영장을 나와 바다에 몸을 담갔습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유유히 떠있으니 비로소 일에서 단절된 참된 휴식을 느끼려던 찰나 아까 왔던 카톡이 신경 쓰여 긴급히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다시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토록 의뢰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변호사인 것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차마 베트남이라고 말은 못했지만요.

하루는 차를 렌트해서 나트랑 시내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에서 렌트의 개념은 운전기사까지 같이 렌트를 하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직접 운전하실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길도 복잡하고 무엇보다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렌트의 장점은 시간 안에 이동경로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냐고요? 번역기 어플 하나면 끝납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1시간 뒤 여기서 다시 와주세요. 이곳에 잠깐 들렀다 이곳으로 가주세요.” 한국어로 입력해 베트남어로 번역한 화면을 보여주면 기사님은 “오케이”라는 말 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토록 편리한 렌트 덕분에 저희 가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편안한 시내 관광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랩을 부를 필요도 택시기사와 흥정할 필요도 없었죠.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 달달한 연유를 넣은 카페쓰어다

이번 여행에서 아내가 가장 만족했던 건 마사지였습니다. 아내의 소원이었던 1일 1마사지를 기꺼이 성취해드렸죠.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수준 높은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베트남식 마사지는 오일(Oil)과 핫 스톤(Hot Stone)을 이용해 막힌 혈류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강한 지압으로 뭉친 근육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타이식 마사지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그래서 강한 압에 길들



리조트 테라스에서 바라본 풍경

여진 분들은 베트남식 마사지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 관련 카톡으로 인해 이미 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온몸 군데군데를 끈으로 단단히 묶어놓은 기분이라랄까요. 그렇게 뭉쳤던 근육의 끈들이 나흘간의 마사지로 인해 말끔하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피로는 ‘없앤다’라 하지 않고 ‘푼다’라고 표현하나 봅니다.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재방문할 의사가 200%라며 아내는 매우 흡족해 했습니다.

마지막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아내와 리조트 테라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와 이렇게 단둘이 있어본 시간도 참 오랜만이라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세월이 어쩔 그렇게 빨리 흘러가던지요. 아내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는 뜬금없고, ‘사랑해’는 오글거렸습니다. ‘미안해’라고 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왜 미안한데?”라고 분석적으로 캐물을 것 같아 꺼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망설이다 휴대폰을 열어 <검정치마>의 노래를 틀었습니다. 그 순간 가장 잘 어울

리는 노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는 걸 보니 꽤나 성공적인 선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이야기를 얼핏 꺼냈던 것 같은데 제가 꿈결에 잘못 들은 것이겠지요. 아내의 입에서 “시드니 천문대 잔디밭에 누워 노을로 붉게 물든 하늘을 보고 싶어요.”라는 말이 나올까봐 노심초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나저나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베트남 커피가 생각나네요. 아쉬운 대로 퇴근길 별다방에 들러 아메리카노나 한 잔 마셔야겠습니다. 물론 샷은 당연히 추가해서요.



수영장에서 본 하늘과 바다

최신판례

대법원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

- * 이혼소송의 피고(반소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인 위반자에게, 원고(반소피고)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2015. 7. 1.부터 1년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였음
- * 위반자가 그 제출을 거부하자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위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음. 위반자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이유로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항고함
-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심리·발령할 때에는 통신과 대화의 비밀 및 자유와 적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위반자의 재항고를 기각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위반(사기) 등 사건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임

- *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제시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자격 위반 판단기준에 따라, ① 피고인이 의료법인 이사장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하나, ② 피고인이 재산출연을 일부 가장하였다거나 일정 기간 동안 고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의료법인을 악용하였다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③ 피고인의 재산출연 가장이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지, 피고인이나 그 배우자의 고액급여 수령이 합리적 범위의 급여 인상에 의한 것인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사정만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임
- * 원심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소송행위의 법정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반의사불벌죄에 관해서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음

부산지방법원

주점에서 과도로 손님을 협박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위로 공무원을 위협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3고단1110 판결)

주점에서 과도를 소파에 수회 내리꽂아 그곳에 있던 손님을 협박하고, 주점 집기를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신의 선글라스가 없어졌다며 동장실에 들어가 항의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례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1630 판결)

부산역에 불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해 112에 전화하여 '부산역 1층에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 갔다'며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관 12명과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를 부산역에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3고단920 판결)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다 마이크를 집어던져 집기를 파손하고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체포된 후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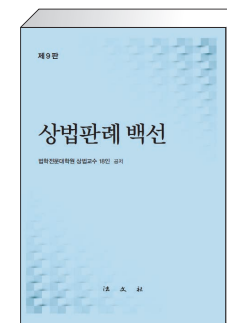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최저임찰금보다
낮게 책정한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0고단3208 판결)

원청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2년간 총 15개 하도급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최저임찰금액보다 합계 약 17억 원 낮게 책정한 피고인 1과 그 대표자인 피고인 2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하되, 이미 과징금 약 57억 원을 납부한 사정을 고려하여 각각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사례.

Book

법률 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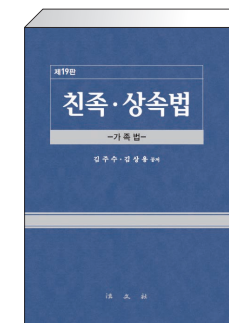
상법판례백선[제9판]

저자 :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18인 공저
출판사 : 법문사 | 페이지 : 1,156면
가격 : 49,000원 | 판형 : 크라운판, 양장

본 서적은 법학전문대학교에서 상법을 강학하는 상법 교수들이 모여 상법 관련의 대법원 판례들 중 이정표가 될 만한 중요한 것들을 엄선하여 평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자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들은 2011년 본 서적의 초판을 발행한 이후 주기적으로 개정용을 하며, 상법과 관련된 쟁점을 다루는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거나 대법원이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주주간 주식양도 제한 약정의 효력, 계약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소주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의 이유 기재 정도, 퇴임이사의 해임 불가, 신용공여금지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등 많은 중요 판결들 및 이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친족·상속법[제19판]

저자 : 김주수·김상용 공저 | 출판사 : 법문사
페이지 : 974면 | 가격 : 49,000원
판형 : 크라운판, 양장

본 서적은 호주제 폐지의 기반을 마련한故 김주수 교수와 그의 아들 김상용 교수가 친족·상속법 분야의 판례와 법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저자들은 대를 이어 본 서적을 개정하며, 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실무에 종사하는 법조인들에게도 친족·상속법 분야의 유익한 안내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집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서 미성년자인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로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과 지난번 개정판 출간 이후 새롭게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 실무

저자 : 권오희 | 출판사 : 박영사
페이지 : 832면 | 가격 : 50,000원
판형 : 46배판(B5)

현재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으로 재직 중인 권오희 변리사는 기술심리관을 포함하여 15년 넘게 특허심판·소송업무를 하면서 익힌 경험과 수석심판장으로서 다양한 사건의 심리지휘를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더욱 활성화하고 특허침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본 서적을 출간하였습니다.

저자는 실무에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정의 실시형태가 해당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실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를 전문적으로 다룬 실무서적을 찾아볼 수 없는 세태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본 서적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적은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특허침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최근의 법리와 실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심판이나 소송에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행·문화·사진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문화유산 답사회

● 동호회 설립 취지

부산지방변호사회 문화유산답사회는 2004. 12. 12. 제1회 문화유산답사(장소: 통도사 성보박물관)를 시작으로 2023. 2. 28. 현재 18년여 간 23회째 답사에 이르기까지 매년 1~4회 정도 부산광역시내 외에 소재한 문화유산 답사 및 식사 모임을 하면서, 문화유산 자체의 작품성 감상, 문화유산에 깃든 선조들의 정신세계와의 교감,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님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은 가입 및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활동 내역

2004년경 모임 시작 (회장: 이인수 변호사님, 총무: 이세형 변호사님)

- 수시로 점심모임 또는 저녁모임

- 1년에 1~4회 시내외 소재 문화유산 답사

● 회원 현황 (2023. 2. 28. 현재)

김동욱(휴업), 김미애(휴업), 김백영, 김상준, 김성수, 김열, 김영근, 김주성, 명호인(총무), 박근수, 박병훈, 박용석, 박준석, 송문일, 신용수, 심연택, 이문성, 이세형(휴업), 이영갑, 이인수(명예회장), 이홍, 정종우(휴업), 정창환(회장), 조진제, 최병주, 최지현, 한기춘 (이상 총 27명)

● 가입 문의

총무 변호사 명호인 (506-6780, 010-2579-6780)

부변사진관

● 동호회 설립 취지

부변사진관은 이제 갓 사진 촬영을 시작하는 작가들부터 고수 사진 작가들까지, 사진 촬영 및 감상을 즐기는 다양한 연령과 연차의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들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규모

현재 총 2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운영실적 및 활동내용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전시회 기간 동안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외 부산지방변호사회 정기 소식지 표지 사진을 여러 차례 제공하기도 하고, 부산지방법원이나 변호사협회 사무실에 사진 작품을 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부산법조에도 사진을 싣고 있습니다.

● 2023년 및 향후 활동 계획

2023년도를 코로나 시대 이후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 활발히 활동하려고 합니다. 매 홀수 월 두 번째 토요일은 출사 모임을 통하여 사진명소를 찾아가서 사진 촬영을 하고, 출사 후에는 근처 맛집을 찾아 식도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매 짝수 월 두 번째 금요일은 점심모임을 통하여 사진에 대하여 공부하는 한편, 회원들 간 교류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가입자격 요건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라면, 언제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문의는 총무(박동주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문의를 기다립니다.

부산 Bar-리스타

● 동호회 설립 취지

커피를 즐기는 변호사 회원들의 커피 타임을 통한 친목 도모 및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바리스타 자격 취득까지도 도전하고자 동호회를 설립.

● 규모(회원 수)

현재 17명, 2023년도 신생 동호회

● 2023년도 및 향후 활동 계획

격월(홀수달)로 점심 모임 후 커피 타임을 가지며 친목을 도모하고, 연중 날짜를 정하여 카페를 운영하는 바리스타 등을 초빙하여 커피에 관한 유용한 팁 등을 배우며, 2023년도에는 민간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로 등을 탐색하여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희망 회원에 한하여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도전.

● 가입 요건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커피를 즐길 수 있고, 커피 타임에 회원들과 즐겁게 어울릴 의사가 있는 회원.

● 홍보 내용

최근 식사 후 커피 한 잔의 여유는 그야말로 ‘국룰’, ‘관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닝 커피를 즐기는 분도 많고, 업무 중 카페인 충전을 위해 커피가 필요한 분도 많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커피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커피를 마시는 즐거움으로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커피동호회를 창립하고 회원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를 즐기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2개월에 1번씩 동호회원이 모여 함께 점심 식사하고, 카페나 부변라운지로 이동하여 30분 가량의 커피 타임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연중 행사로 카페를 운영하시는 바리스타를 초빙하여 커피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배우고, 더 나아가 바리스타 자격을 민간 자격증으로 취득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향긋한 커피향을 즐기고, 함께 담소를 나누며 동호회원들과 교류하실 회원께서는 주저마시고 가입신청을 해 주십시오.

● 가입 방법

회장(윤혜주 변호사) 또는 총무(최해영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사무국을 통해 가입 신청.

부산고메

「부산고메(BUSAN GOURMET)」는 부울경의 노포 네비게이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노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아픈 식민지 역사를 가진만큼 현재 부울경에 존재하는 노포 가치를 높이 평가, 보존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원끼리 경험하고 기억하고 공유하는 동호회입니다. 축적된 노포 정보는 별도의 전자기록 형태로 남겨둡니다.

부산(울산, 경남)을 사랑하는 분, 노포를 알리고 싶은 분, 미식가인 분, 풍류가인 분, 편한 변호사 지인이 필요한 분 등 누구든 환영입니다. 가입하시면 아래와 같은 멤버십 전용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회원 15명에 이르면 실물 카드로 발급 전환할 예정입니다). 온갖 곳은 일 마다하지 않는 설립자 김남희 변호사(010-8900-1721)에게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어반리서치

● 동호회 설립 취지

여러분들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곳은 ‘부산’입니다. 그런데 부산 어디에 가면 맛집이 있고, 뷰는 어디가 좋으며, 사진은 어디가 잘나오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막상 타지에 있는 지인들이 부산 여행을 온다고 맛집 등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또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가슴 답답한 일이 생겨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싶지만, 일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산 시내에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이럴 때를 위하여 도시탐방모임 어반리서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의 구석 구석을 탐방하고자 합니다.

● 규모(회원 수 등)

회장은 변호사 이일권, 총무는 변호사 조영웅이고, 회원은 현재 30명 정도입니다.

● 운영실적

우리 동호회는 도시를 탐방하는 모임으로서, 부산의 길을 걸으며 사람의 사는 모습을 느껴보는 야외 모임으로 기획되었으나, 약 3년간 코로나 19 영향으로 2~3회의 실내 모임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 의도에 걸맞게 올해부터 야외 모임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 활동내용

아직까지 야외 모임을 하지 못하였고, 실내 모임은 주로 변호사회관 강당에서 동영상을 통하여 부산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 점심을 함께 하였습니다.

● 2023년 향후 활동 계획

2023년 3월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야외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향후 활동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3월 : 근대 조선업의 발상지 영도 탐방

2023년 5월 : 이바구가 살아있는 초량동 산복도로 탐방

2023년 7월 : 서민의 삶과 먹거리를 추억하는 국제시장 탐방

2023년 9월 : 피란민 마을에서 관광명소로 태어난 감천문화마을 탐방

2023년 11월 : 21세기 부산의 새로운 마을 센텀시티 마린시티 탐방

● 가입 자격 요건

부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홍보 하고 싶은 내용

모든 회원에게 부산 역사의 발자취를 담은 책을 드리겠습니다.

● 가입 방법

가입을 원하시는 회원은 회장 이일권 변호사(010-7202-2105) 또는 총무 조영웅(010-8513-2162)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가입 신청을 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회무·회의일지

이사회

● 7/10(월) 11:00

제3차 이사회

의 안 : 변호사사무직원의채용과직무에관한규칙

개정의 건 등

장 소 : 중회의실

상임이사회

● 7/10(월) 10:00

제12차 상임이사회

의 안 :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등

장 소 : 회장실

위원회

● 7/4(화) 12:00

소식지편집위원회

의 안 : 소식지 8월호 발행의 건

장 소 : 정마담짬뽕

● 7/19(수) 11:30

제3차 인권위원회

의 안 : 법률구조신청사건 구조심의 등

장 소 : 중회의실

● 7/4(화) 11:00

2023년도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장 소 :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

참 석 : 회장 외 집행부 4명

● 7/5(수) 15:30

부산회생법원 희망출발 상담센터 개소식

장 소 : 부산지방법원 등기국내 희망출발 상담센터

참 석 : 회장

● 7/17(월) 11:00

연제구청과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식

장 소 : 연제구청

참 석 : 회장

● 7/18(화) 12:00

대한변호사협회 지역 프로보노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장 소 : zoom 온라인 회의

참 석 : 인권위원회 간사 이현우 변호사

● 7/21(금) 16:00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의 교류회

장 소 : 토론회(대회의실)

만찬회(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홀)

참 석 : 집행부 및 국제위원

제12차 상임이사회 의사록

[의결 사항]

01

법제상임이사
소관 회무

가.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경유업무의운영에관한지침 개정의 건
원안대로 의결하다.

02

권익상임이사
소관 회무

㉠ 더불어민주당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
원안대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다.



회원동정

부산 시민의 따뜻하고 편안한 이웃



2023. 7. 31.

총 회 원 : 1,292명

개업회원 : 1,089명(본원 894명, 동부 131명, 서부 64명),
휴업회원 134명 , 준회원 6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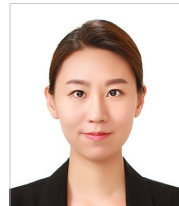
신규개업

재개업



7/24 조영래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401호
거제동, 고려빌딩)
전 화 0507-1341-7182
팩 스 *
이메일 long5308@gmail.com
약 력 1989년생, 부산남일고교, 부산대,
부산대법전문 5기, 변시 6회



7/28 황서영 회원

주 소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나길
162, 1층 102호 (중동, 힐탑프라자)
전 화 051-7652-5668
팩 스 051-7750-5668
이메일 ilp20@naver.com
약 력 1983년생, 복원여자고교, 중앙대,
동아대법전문 10기, 변시 11회



7/20 최윤선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40, 10층 (거제동)
서정빌딩
전 화 051-711-9729
팩 스 *
이메일 yoonsun1228@hanmail.net
약 력 1986년생, 문현여자고교, 연세대,
연수원 42기, 사시 52회



소속변경



7/3 현준우 회원 (서울회에서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6층 601호
(거제동, 로원타워빌딩),(법)화담
전 화 051-501-7477
팩 스 051-506-7477
이메일 onlycrude@gmail.com
약 력 1981년생, 보성고교, 서울대,
서울대법전문 8기, 변시 8회



7/6 이윤대 회원 (울산회에서 부산회)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9,
6층(거제동, 고려빌딩),(법)해람
전 화 051-959-9088
팩 스 051-959-9098
이메일 rick0099@naver.com
약 력 1980년생, 대구영남고교, 연세대,
동아대법전문 3기, 변시 3회

7/3 강민경 회원 (부산회에서 울산회)



사무소이전



7/4 정재호 회원

주 소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13, 2층
(거제동, 시티빌딩)
전 화 501-3064
팩 스 501-3074
이전일 2023. 7. 4.



7/6 홍의중 회원

주 소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중앙동3가,
부산우체국) 9층 홍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전 화 442-3778
팩 스 442-3779
이전일 2023. 7. 6.



7/19 김철홍 회원

주 소 부산 남구 전포대로 133 (문현동)
오피스동 14층 109호
전 화 070-4142-0302
팩 스 050-4192-3899
이전일 2023. 7. 19.



법무법인 등 구성원 변경

7/3	(법)올마루 : 법무법인 올마루 설립 인가
7/3	(법)로인 : 법무법인 로인 설립 인가
7/5	(법)정산 : 최성식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7/5	(법)무한 : 심승미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7/12	(법)든든 : 이정연 회원, 김해린 회원 소속변호사 탈퇴
7/26	(법)남문 : 전종호 회원 구성원변호사 탈퇴

경조사

7/8(토) 15:00	박현(88) 회원 본인 결혼 장 소 : 사학연금 S웨딩홀	7/22(토) 16:30	최현우 회원 장남 한길 결혼 장 소 :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2층 단독홀
7/10(월)	박동일 회원 부친상 빈 소 : 동래봉생병원장례식장 VIP 1호실(10층)	7/22(토)	신상호 회원 모친상 빈 소 : 동아대학교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2023년도
무료법률상담
현황

참여 변호사: 85명
(본원 77명, 동부 8명)

본회 경유한 무료법률상담 건수		법원종합청사 무료법률상담 건수	
월	상담건수	월	상담건수
1월	0	1월	285
2월	2	2월	310
3월	2	3월	348
4월	2	4월	295
5월	0	5월	320
6월	2	6월	321
7월	4	7월	288
합계	12건	합계	2,167건

아름다운
인연 봉사단
후원금 현황

2023. 7. 1. ~
2023. 7. 31.

후원단체 및 개인	후원금	후원단체 및 개인	후원금
김백영	50,000	정덕관	10,000
김유리(82년생)	30,000	법무법인 부산	50,000
조성제	200,000	법무법인 서면	50,000
합계 390,000원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우리 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1일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

양회는 2021년 6월 공식적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하였고,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이번에 효고회가 처음 부산회를 공식 방문했다. 효고회 측에서는 올해 4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시바타 마리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위원장 등 14명의 방문단이 참석했고,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과 황주환 국제위원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교류회에 앞서 효고현변호사회 방문단은 부산지방법원 이준범 부장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형사 법정을 방청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디지털 수사실, 심리생리 분석실

등도 견학하였다.

이날 변호사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서현선 국제위원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현황과 대책’을 나쿠라 히로타가 부회장이 ‘일본의 변호사 닛컴의 상황’을 주제로 발표하고, 양국의 법률 플랫폼 제도를 비교하며 상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부산시티호텔 2층 컨벤션 홀에서 개최된 만찬회에서 양국 변호사들은 친목을 다지며, 내년 효고현 고베시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부산지방법원과의 간담회 결과 안내(2023.7.4.)

부산지방법원의 요청사항

1. 민사 사건 관련

① 문건 제출 관련

가. 준비서면 등을 재판 전일 또는 당일 아침에 제출하거나 심지어 재판 직전에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부에서 준비서면 등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여 재판 준비에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개인인 경우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기일에 임박하여 통지가 늦어져 당사자들이 법원에 항의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최소한 재판기일 1주일 전까지는 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일에 임박하여 급하게 문건을 접수하고 송달부터 해달라고 전화로 독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법원에서는 전자소송에 동의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우편 송달의 경우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e-pos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페이지가 넘는 서면이나 동영상 파일은 우체국의 e-post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판부에서는 서면이나 동영상 파일을 제출한 당사자에게 서면 부분이나 동영상 usb를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우편송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측에서 재판부의 보정권고 전에 미리 서면 부분이나 동영상 usb를 제출해주시다면 소송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변론기일 관련

가. 영상재판이라 하더라도 변론기일을 엄수하여 정해진 시간에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변론기일 말미에 재판장의 다음 기일 고지 등 마무리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소송대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정예절과 관계된 부분이니 이러한 행위는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기일변경신청 관련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일에 임박하여 하는 기일변경신청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론기일에서 논의하거나 정리할 쟁점이 많이 있음에도 단순히 감정결과, 사실조회회신 등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소송위임장 제출 관련

현재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조정절차와 소송절차가 연계가 되지 않는 까닭에, 조정절차에서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면 당사자로부터 다시 전자소송 동의를 받아야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소송대리인께서 전자소송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님들께서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건에서는 전자소송으로 소송위임장을 한 번 더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⑤ 문서송부촉탁 관련

문서송부촉탁이 꼭 필요하다고 하여 신청을 받아주었는데 정작 그 회신결과가 도착하면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나 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문서송부촉탁이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가급적 그에 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형사 사건 관련

① 의견서 등 제출 관련

가. 변호인이 첫 공판기일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정에서 구두로만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판기

일 전에 의견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등을 제출하실 때에는 가급적 공판기일 전에 일정한 여유를 두고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공판기일 직전에 제출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공판기일 전 날 오후 늦게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경우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장에게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법정에도 부분을 지참해서 재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실 때 검찰 측에 송달할 수 있도록 부분도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② 증거인부 관련

가. 증거인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구두로만 증거의견을 밝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판기일 전에 증거인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사보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전부를 일률적으로 부동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보고 중에서도 수사기관의 의견 부분 외에 사진이나 서류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은 별도로 분리하여 증거의견을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니, 수사보고를 일률적으로 부동의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증거의견 분리제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③ 증인신문 관련

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이 경험한 사실 자체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이른바 ‘피해자다움’을 전제로 하는 신문을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신문을 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제지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증인에 대하여 항상 존칭과 경어를 사용해주시고, 증인과 과도한 언쟁을 벌이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판부와 사전에 협의한 증인신문 예상 소요시간을 가급적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일지정 및 기일변경신청 관련

구속사건은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첫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사건 첫 기일의 경우 변호인이 새로 선임되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하시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사집행과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사건을 신청하거나 해제신청을 할 때 기본적인 사항(신청서 작성 형식, 송달료 등 비용납부)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종합민원실

우리 법원 종합민원실은 2023년 하반기에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외부기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형사공탁절차 안내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 행사는 2022. 12. 9.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제도에 따른 관련 제도와 규정 등을 선별·정리하여 법률서비스에 종사하는 외부기관에 알려드리으로써 공탁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행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님들과 사무원들에 대한 많은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의 요청사항 및 부산지법의 답변

1

변론시각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는 요청

▶▶▶ (법원측 답변) 재판부에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2

조정위원이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못하도록 개선을 요청

▶▶▶ (법원측 답변) 조정전담 재판부에 전달하고, 조정위원들에게 민원내용 등을 전달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

조정위원 실명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

▶▶▶ (법원측 답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4

소송구조를 결정함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

▶▶▶ (법원측 답변) 재판부에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5

참고서면도 송달하여 달라는 요청

▶▶▶ (법원측 답변) 재판부에 간담회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6

국선료 지급시 사건번호를 표시해 달라는 요청

▶▶▶ (법원측 답변) 사건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

법원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

▶▶▶ (법원측 답변) 친절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법정이나 복도 등에서의 소란행위 발생시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는 요청

▶▶▶ (법원측 답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

부산판례연구회 개최시 자료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

▶▶▶ (법원측 답변) 부산판례연구회에 참여하는 변호사님들께 사전에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변호사회에 자료를 미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님들이 연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부산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보수를 증액해 달라는 요청

▶▶▶ (법원측 답변) 가정법원에 전달하겠습니다.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추가 건의사항]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기일변경신청에 대해 엄격히 검토해 달라는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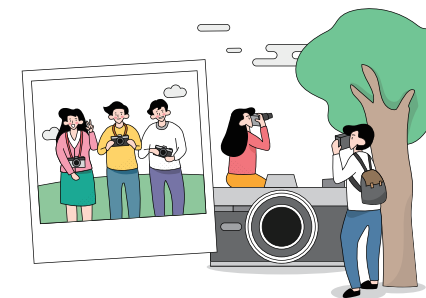
▶▶▶ (법원측 답변)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정을 모를 수 있으니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 포괄 위임 : 송달영수인, 법무사 지정 ⇒ 시정 요망

▶▶▶ (법원측 답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01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소식지 원고 및 표지 사진 모집



월간으로 발간되는 부산지방법변호사회 소식은 회원 여러분의 소식지입니다. 이에 회보에 실을 회원 여러분의 원고와 표지 사진을 모집 하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식지 원고

- 소 재 회원 참여활동 : 우리회 회무, 연구회, 동호회 활동
회원기고 : 판례평석, 칼럼, 수필 등 제한 없음
- 분 량 200자 원고지 15매 내
- 마 감 매월 25일까지
- 접 수 news@busanbar.or.kr

※ 소정의 비용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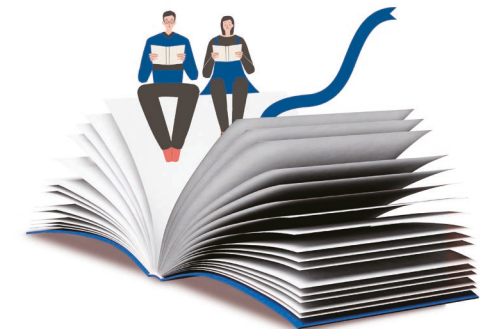
표지 사진

- 소 재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직접 그린 그림
(제목과 간단한 설명 첨부)
- 마 감 매월 25일까지
- 접 수 news@busanbar.or.kr

※ 소정의 비용을 드립니다.

02

도서실 이용 안내



부산지방법변호사회도서실

도서실 프로그램 접속 사이트입니다.

http://kcms.kdot.co.kr/kcms_bsbar/Main/MA

대출을 희망하시는 회원 및 변호사 사무직원분들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논문 등의 원문정보제공 이용안내

본회 도서실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회도서관과의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각종 학위논문을 비롯한 원문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도서실을 경유하여야 하며,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위 정보 이용시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비용(1면당 10~100 원)을 부담하여야 됩니다.

판례 검색 사이트 이용안내

본회 도서실에서는 방대한 법률정보를 보유한 법률포털사이트 로앤비(LAWnB)를 비롯하여 엘박스(LBOX)·케이스노트(CaseNote)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편집후기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2023년 7월이 지나가고
8월이 왔음에도 여전히 불볕더위는 가실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모두 끝까지 더위 잘 이겨내시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위원 최원진-